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10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1053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0047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김재성, 이상혁, 최철호

변론종결 2022. 4. 5.

판결선고 2022. 5. 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0047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 도로 10㎡ 중 A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45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고, 아래에서 추가 기재하는 부분 이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체결된 점’ 다음에 ‘A은 N에게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이야기한 점, A과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대출이 안 될 경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층 건축 승인받은 건물은 잔금 전에 사용승인 허가를 득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매매계약 체결후 대출이 불가함을 확인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특약에 따라 해지할 수 있었던 점, 3층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매매계약 체결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등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A, Q, N, R, 피고는 친분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컨설팅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점’등을 추가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